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05.02.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서류의 내용		
1	홍○정	00.02.2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석통보 2회에도 불응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보관기관 경과반송, 유치송달 불가	부산시 영도구 청학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2.05.02. ~ 2022.05.13.(12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이은정(Tel. 051-860-21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